

펀드투자권유 전문인력 투자자보호

Lesson

집합투자관련 법규 1

1. 집합투자기구제도의 성립과 발전
2. 집합투자기구(투자펀드)의 특징 및 분류
3.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Collective Investment)의 정의
4. 집합투자기구의 기관
5.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및 등록

학습이정표

• • 학습목표

- 집합투자기구(투자펀드)제도의 성립 및 발전의 역사의 주요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 집합투자기구(투자펀드)의 특징, 장점 및 펀드분류기준 등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규제체계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 집합투자의 정의 및 집합투자와 간접투자의 차이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 집합투자기구의 기관 및 설립, 등록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학습내용 • •

- 집합투자기구제도의 성립과 발전
- 집합투자기구(투자펀드)의 특징 및 분류
-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Collective Investment)의 정의
- 집합투자기구의 기관
-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및 등록

집합투자관련 법규 1

1

집합투자기구제도의 성립과 발전

1. 집합투자기구(투자펀드)의 개념

- 투자펀드(investment fund)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pooling) 증권 등의 자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분에 따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집단적·간접적 투자제도를 의미
- 일반적으로 집단적·간접적 투자제도를 “집합투자스킴(collective investment scheme)”이라고 하는데,
 -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투자매개(investment vehicle)를 통해 투자자와 투자대상 간의 현금흐름을 결합시키는 매개금융을 집합투자스킴(collective investment scheme)이라고 할 수 있음

* 2003년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제정되면서 ‘간접투자기구’가 투자펀드의 법률 용어가 되었으며, 2009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집합투자기구’로 법률 용어가 변경됨

2. 집합투자기구(투자펀드) 발전의 역사

(1) 19세기 영국 투자신탁의 등장

1) 19세기 영국에서 투자신탁제도 발생 배경

- 19세기 초반부터 유럽 및 미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됨에 따라 이들 나라에서 거대자본의 수요가 증대하면서 영국 등 각국에서의 투자수익률이 현저한 격차가 발생하여 영국의 투자자들은 해외투자로 투자방향을 전환
- 투자신탁은 일반대중의 자본축적 증대와 국내외 투자수익률 차이를 배경으로 일반투자자들을 위한 해외투자수단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된 제도이었으며, 투자신탁제도를 법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영국에서 이전부터 집합투자수단의 하나로 이용되어 왔던 신탁(Trust)이었음

2) 최초의 투자신탁인 Foreign and Colonial Trust의 설립(1868)

- 투자신탁제도 생성 이전 이미 회사제도가 집합투자수단의 하나로 이용되고 있었으나 1860년대에 회사의 난립에 따른 부작용을 겪으면서 투자자들이 회사를 위협이 매우 높은 제도로 인식
- 위험을 분산하면서도 회사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수단으로 투자신탁이 부상하였으며, 이러한 사회·경제적 배경과 법적 전통에 따라 최초의 투자신탁인 Foreign and Colonial Trust가 1868년에 설립됨

집합투자관련 법규 1

1

집합투자기구제도의 성립과 발전

3) 투자신탁의 쇠퇴와 회사형태 집합투자로의 전환

- 최초 투자신탁의 설립 이후 많은 투자신탁이 투자자들에게 확정이자를 약속하였으나, 투자대상이 초기의 확정이자부증권(국채, 지방채, 정부보증채)에서 회사채, 우선주, 대형회사의 보통주 등으로 확대되면서 점차 확정이자 미지급 상황 발생
- 수익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일부 투자신탁은 배당과 상환에 있어 우선순위 수익증권과 후순위 수익증권의 두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였으나, 1876년에 일부 투자신탁이 지급불능사태 발생
- 1879년 보통법상 신탁으로 조직된 투자신탁의 적법성에 관하여 “투자신탁이 이윤을 목적으로 20인 이상으로 구성된 조직체인 이상 회사법에 의한 등록이 필요하며 추첨에 의한 상환방법은 도박으로 보아 회사법에 위반된다”라는 판결이 나옴
- 1880년 항소법원에서 1879년 판결이 파기되었으나, 이후 투자신탁은 급속히 쇠퇴하고 회사제도가 집합투자수단으로 이용되기 시작함
- 이 사건을 계기로 영국에서는 집합투자수단으로 회사형태인 투자회사(Investment company)로 설립·운용하게 되었으나, 그 명칭은 투자신탁(Investment trust)이라는 종전의 명칭을 그대로 계수하여 사용하게 됨
- 영국의 투자신탁은 결국 법적으로는 회사법(Company Act)에 의하여 설립되고 규율되므로 일반주식회사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어 중간에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형태로 설정·운용하게 됨

(2) 1930년대 미국의 투자신탁

1) Massachusetts trust

- 미국에서 최초의 주목할 만한 신탁의 이용은 회사제도의 대안으로서 신탁을 이용한 것인데, 이를 Massachusetts trust(business trust 또는 common trust라 칭함)이라 함
- Massachusetts trust는 펀드를 관리하는 수탁자에 의한 신탁선언(declaration of trust by the trustee)에 의해 신탁이 설정되는 방식을 취하였고, 신탁에서의 수익권은 유통 가능한 지분으로 분할되었음
→ 회사의 부동산거래를 금지하는 州법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Massachusetts州에서 번성하였으며, Massachusetts trust는 현재까지도 REIT(Real Estate Investment Trust : 부동산투자신탁)이라는 명칭으로 집합부동산투자의 한 수단으로 많은 州에서 이용되고 있음

집합투자관련 법규 1

1

집합투자기구제도의 성립과 발전

2) Investment Company

- 1924년 ~ 1929년 사이 투기적인 주식투자열풍이 불면서 투자신탁산업이 빠르게 성장하였고, 이 과정에서 투자회사(Investment Company)가 집합투자의 지배적인 수단으로 성장
 - 당시 투자회사(Investment Company)는 대부분 환매가 허용되지 않는 폐쇄형 펀드였으며, → 우선주 발행이라는 자본구조를 통해 부채비중을 높이거나 신용거래 또는 외부차입 등을 통해 레버리지투자와 투기적인 거래를 일삼고, 한편으로는 펀드설립자가 유가증권을 처분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함
- 1929년 대공황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가치도 폭락하였고, 그 결과 1930년대 후반에는 투자회사 중 절반 이상이 파산
 - 이 과정에서 펀드운용사의 사기 내지 이익상충행위*가 발견되어 투자전문가에 의한 펀드관리에 대한 신뢰가 실추됨
 - * i) 투자회사가 관계증권회사로부터 시장가격에 비해 고평가된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 ii) 투자회사가 관계회사에 시장가격 이하로 주식을 매도하는 행위, iii) 관계증권회사에 과도한 브로커수수료를 지불하는 행위 등

3) 신탁제도를 이용한 투자신탁(unit investment trust) 등장

- 1931년 보유유가증권 가격하락으로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가격이 하락하자 전문적인 투자관리를 하는 투자수단 쪽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동
 - 이에 투자관리회사에게 포트폴리오 변경권한을 부여한 유연한 투자신탁(flexible trust)이 출현하였고, '신탁'을 이용한 현대적 의미에서의 투자신탁이 영국이 아닌 미국에서 탄생하게 됨

(3) 영국 투자신탁(Unit Trust)의 현대적 발전

1) Unit Trust의 탄생

- 미국에서 발전한 '투자신탁'은 영국에 수입되어 1930년대 영국에서 현대적 형태의 투자신탁(Unit Trust)이 탄생하였음
 - Unit Trust는 투자신탁의 관리회사와 수탁자 간 계약에 의해 투자신탁이 설정되었고, 이는 법적인 면에서 과거의 투자신탁(Investment Trust)과의 결별을 의미하는 것임

집합투자관련 법규 1

1

집합투자기구제도의 성립과 발전

2) 모집식 투자신탁의 출현

- 1934년 유연한 투자신탁(flexible trust)이 도입되면서 고정형 투자신탁(fixed trust)이 자취를 감춤
- 1935년에는 수탁자에게 자금을 예치하여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투자자에게 수익증권을 매도하는 방법(매출식) 대신 설정자금을 투자자로부터 모집하는 방식(모집식)이 출현
- 이후 모집식 투자신탁이 현대적 투자신탁의 표준이 되었는바, 여기에는 환매제도를 통한 환금성 보장이라는 구조적 특징이 중요한 역할을 함

3) 영국의 사기방지법(Prevention of Fraud Act)

- 사기방지법(1939년 제정, 1958년개정)에서는 i) 감독기관이 투자신탁의 승인을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ii) 투자신탁에 대하여 운용자와 수탁자의 이증관리구조, iii) 원활한 환매를 위한 유동성 확보를 요구함
- 이에 따라 다른 형태의 계약구조(예 : 조합계약)은 집합투자수단으로 활용될 수 없었고, 유동성이 부족한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신탁 설정이 불가능
 - 이로 인해 영국에서는 회사제도를 이용한 폐쇄형 펀드인 Investment Trust와 신탁제도를 이용한 개방형 펀드인 Unit Trust만 존재하게 되고, Unit Trust가 대표적인 상품으로 성장

4) 영국의 개방형 투자회사 OEIC(Open-Ended Investment Company) 등장

- EC는 1987년 집합투자제도 관련 규제지침인 'UCITS(Directives on Understandings for Collective Investment in Transferable Securities)'을 공포함에 따라 영국은 OEIC 도입을 추진*함
 - * 영국은 집합투자제도의 국제화를 적극 추진하였으나, 신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Unit Trust를 독일, 프랑스를 제외한 여타 EU국가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법인형 투자회사제도를 도입하게 됨
- 영국은 1997년 미국의 투자회사와 유사한 법인형의 개방형 투자회사(Open-Ended Investment Company : OEIC 또는 Investment Company with Variable Capital : ICVC)라는 제도 도입

집합투자관련 법규 1

1

집합투자기구제도의 성립과 발전

(4) 미국 투자회사(Mutual Fund)의 발전

1) Mutual Fund의 발전

- 미국에서는 대공황을 거치면서 회사형 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Investment Company)가 뮤추얼펀드(Mutual Fund)* 라는 명칭으로 집합투자의 대명사로 자리매김

* 원래 뮤추얼펀드는 환매를 허용하는 개방형 투자회사를 지칭하는 용어이나 투자회사의 절대다수가 개방형이므로 뮤추얼펀드가 바로 투자회사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

- (Mutual Fund가 대중의 신뢰를 받게 된 이유) i) 항상 순자산가치대로 환매에 응하는 점, ii) 단일 자본구성으로 되어 있어 레버리지작용도 없고, iii) 공황기에 치명적인 경영곤란에 빠지지도 않고, iv) 불황을 극복한 주가상승기에는 종목이 고정된 단위형보다 좋은 운용실적을 냈기 때문임
- 또한, 뮤추얼펀드는 Unit Trust와 Company 양자의 장점만 취한 것으로, i) Unit Trust와 마찬가지로 주주의 청구에 따라 주식을 환매하며, ii) Company와 마찬가지로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존재함

2) Mutual Fund 성장배경

- (산업 외적 요인) 1980년대 이후 안정적 성장을 지속한 미국경제가 금융시장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투자자의 직접금융시장 투자를 유도
- (수요 측면에서의 요인) i) 금융개혁으로 인한 개인금융자산운용의 변화, ii) 유가증권투자를 선호하는 베이비붐세대의 등장, iii) 확정각출형(Defined Contribution Plan) 기업연금제도의 확립
- 즉, 1980년 금융개혁법에 따라 개인금융자산운용은 은행예금에서 증권투자로, 직접투자에서 간접투자 형태로 전환되기 시작하였고, 1980년대에 베이비붐세대가 투자회사 투자자층의 핵심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음
- 또한, 1974년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ies Act; ERISA)에 의해 도입된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은 비과세혜택이라는 세제상 유인으로 인해 노후대비 수요층이 연금제도를 통한 간접투자를 선호하게 만들었음
- 특히, 1978년에는 확정각출형(Defined Contribution Plan) 기업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뮤추얼펀드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함

<선진국과 개도국의 펀드제도 발전 연혁>

- 미국·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대체로 경제발전과정에서 투자펀드제도가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발전되고 이후 투자자보호 등을 위한 관련 법률이 정비됨
 -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투자펀드 관련법을 먼저 제정한 후 인위적으로 투자펀드제도를 활성화시킴

집합투자관련 법규 1

2

집합투자기구(투자펀드)의 특징 및 분류

1. 집합투자기구(투자펀드)의 특징

1) 집단성과 간접성

- 투자펀드에서는 투자자(자금제공자)와 운용자(자금운용자)가 분리되며 자금은 집합·운용 되며 자금운용 과정에서 투자자는 소극적인 역할

2) 실적배당원칙과 투자자평등의 원칙

(1) 실적배당원칙

- 투자펀드의 운용실적(운용에 따른 수익과 손실)은 모두 펀드 투자자에게 귀속됨

(2) 투자자평등의 원칙

- 펀드 투자자는 펀드의 수익과 의결권 등에 있어 투자지분에 따라 동등한 권리를 가짐

3) 펀드자산의 분리

- 집합된 자금이 운용자(자산운용회사)의 고유재산과 법적으로 엄격하게 분리

2. 집합투자기구(투자펀드)의 분류

1) 법적 형태에 따른 분류

- 법적 형태에 따른 펀드분류는 집합적·간접적 투자를 위한 법적 도구(회사, 신탁, 조합, 계약)가 무엇인가에 따른 분류임

- 자산운용법은 주식회사 형태의 회사형펀드(투자회사)와 신탁형펀드(투자신탁)만 있었으나*, 자본시장법에서는 상법상 유한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합자조합·익명조합도 법적 기구의 형태(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로 도입

* 자산운용법은 공·사모펀드 모두에 대해 원칙적으로 주식회사 형태의 회사형과 신탁형만을 인정. 다만, 사모투자전문회사(소위 PEF)에 대해서는 합자회사형태의 회사형펀드로 규정

- 자본시장법에서는 법적형태에 따른 펀드분류는 i) 법인(회사)형펀드(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ii) 신탁형펀드(투자신탁), iii) 조합형펀드(투자합자조합·투자익명조합)로 구분

집합투자관련 법규 1

2

집합투자기구(투자펀드)의 특징 및 분류

2) 운영구조에 따른 분류

(1) 개방형펀드 : 가변자본투자회사(ICVC)

- 펀드지분 소유자(투자자)에게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펀드로서, 환매수요 충당과 펀드규모 증대를 위해 계속적으로 펀드지분을 추가 발행하는 펀드
- 펀드지분을 계속 판매하고 환매하는 구조 때문에 개방형펀드에서는 펀드지분의 거래(판매, 환매) 시 적용되는 가격이 중요한 의미를 지님

(2) 폐쇄형펀드

- 펀드지분을 환매하지 않으며, 펀드지분을 계속적으로 발행하지도 않는 펀드
- 펀드지분이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므로 투자자는 시장거래를 통해 투자자금을 회수하게 됨
 - 환매부담이 없기 때문에 펀드의 투자목적에 따라 펀드자산을 전부 투자할 수 있고 비유동성자산에 대한 투자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3) 공모펀드와 사모펀드

- 공모펀드란 공모(모집·매출)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으는 펀드
- 사모펀드란 사모방식으로만 투자자를 모으고 투자자의 수나 투자자의 자격이 제한되는 펀드

4) 내국펀드와 외국펀드

- 내국펀드란 우리나라의 법률에 따라 만들어진 펀드
- 외국펀드란 외국의 법률에 따라 만들어진 펀드
 - 외국펀드는 원칙적으로 외국법의 적용만을 받지만, 외국펀드를 내국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국내법의 적용을 받음

집합투자관련 법규 1

3

집합투자(Collective Investment)의 개념

1. 집합투자(Collective Investment)의 개념

▣ **자본시장법은 “집합투자(Collective Investment)”를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 또는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으로 정의(법 제6조제5항)**

※ 펀드의 특성은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서 운용하는 것에 있으므로(pooling), ‘펀드를 이용한 투자’의 명칭을 자산운용업법상 간접투자(Indirect Investment)에서 집합투자(Collective Investment)로 변경

2. 간접투자(Indirect Investment)와 집합투자(Collective Investment)의 정의 비교

간접투자와 집합투자의 정의 비교. 정리

자산운용법	자본시장법
(1) 명칭 : 간접투자	집합투자
(2)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 또는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3)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4) 증권, 파생상품 등 투자대상자산에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것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행하는 간접투자 제외	다른 법률(부동산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 산업발전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의한 사모펀드, 자산유동화계획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집합투자관련 법규 1

3

집합투자(Collective Investment)의 개념

1)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의 모집

- 개정자본시장법(법률 제11845호, 2013.5.28, 일부개정)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등 금융투자업 상호간의 구분을 그 특성에 맞추어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 집합투자의 개념을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하여 모은 금전등'에서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으로 개정
- (단독사모펀드 설정 금지) 개정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의 개념으로는 복수의 투자자에게 집합투자기구 가입을 위한 투자권유를 하고 실제로는 1인의 투자자만 있는 '단독사모집합투자기구'는 설정(설립)을 제한하는 결과

<제정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 개념 中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의 의미>

- 제정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집합투자의 개념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야 하므로 처음부터 투자권유가 1인에게만 행해진 경우는 집합투자에 해당하지 않아 집합투자기구로 설정(설립)될 수 없고 금융위에 등록할 수도 없음
 - *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관리신탁계약 및 투자성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의미(법 제9조제4항)
 - 이는 제정자본시장법상 이른바 1인 투자자에게만 투자권유를 하여 그 투자자만이 수익자가 되는 “단독사모집합투자기구”的 설정(설립)이 제한된다는 의미
- 제정자본시장법상 2인에게 투자권유 하여 2인으로부터 자금 등을 모으거나 2인에게 투자권유를 하되 실제로는 1인으로부터만 자금 등을 모은 경우에도 집합투자의 요건을 충족하면 집합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집합투자 여부가 결정되게 될 것임을 의미

2) 금전 등을 모아

- 집합투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금전등을 “모아” 운용하여야 함
 - 금전등을 모은다는 의미는 여러 투자자가 납입 또는 출자한 금전등을 각각 별도로 각자의 계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데 합쳐 집합적으로 운용한다는 것을 의미
- ※ 불특정금전신탁 중 집합하여 운용하지 않고 각 신탁계정마다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에 해당하지 않음

집합투자관련 법규 1

3

집합투자(Collective Investment)의 개념

4)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

- 집합투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함
 - 집합투자재산으로 운용 가능한 자산의 범위는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자산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
- 투자대상자산의 운용방법이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운용의 개념이 문제될 수 있는바,
- 자본시장법은 관리신탁*의 경우도 투자대상자산에 해당함을 감안할 때 운용의 개념에 소극적인 운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

* 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처분권한이 수익자에게 없는 신탁

5) 운용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

- 집합투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운용)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이어야 함
 - 운용결과에 따른 책임이 그대로 해당 투자자에게 그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귀속되는 형태의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
 - 투자·운용결과에 따른 손익이 투자자에게 그대로 귀속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집합투자로 볼 수 없음

* 예 : 투자자가 그 투자금액을 초과하여 이익의 배당·배분 등을 받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집합투자관련 법규 1

3

집합투자(Collective Investment)의 개념

3. 집합투자의 적용배제

1) 개별법에 따라 설정된 사모펀드(법 제6조제5항제1호)

- 부동산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산업발전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정된 사모의 방법으로 49인 이하 투자자로부터 금전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펀드(사모펀드)

2) 자산유동화법('ABS법')에 따른 금전의 운용·배분(법 제6조제5항제2호)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전 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경우

3) 집합투자의 적용배제 유형 열거(법 제6조제5항제3호 및 영 제6조제4항)

- 집합투자의 정의 확대에 따라 새로이 집합투자의 정의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서 집합투자 규제의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집합투자에서 배제

<집합투자 적용배제 유형>

1. 예치기관이 투자자예탁금을 예치 또는 신탁받아 운용·배분하는 경우
2. i) 종합재산신탁으로서 금전수탁비율이 40% 이하인 경우, ii) 신탁재산 운용에 따른 수익금의 운용 또는 신탁의 해지나 환매에 따라 나머지 신탁재산의 운용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수탁한 금전을 공동운용 하는 경우
3. 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그 업무를 하는 경우
4. 종합금융회사가 어음관리계좌(CMA) 업무를 하는 경우
5. 법인세법상 특수목적법인이 금전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경우
6. 자주회사(국내회사)가 그 사업을 하는 경우
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사업을 하는 경우
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계판매 사업을 하는 경우
9.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자가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으로 해당 사업을 하여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다만, 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특정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제외
10.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그 밖에 비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계
11. 종종, 그 밖의 협연관계로 맺어진 집단과 그 구성원을 수행하는 비영리사업
12. 민법상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우리사주조합,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이 해당 정관 등에서 정한 사업목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3.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 전원의 합의에 따라 운용·배분하는 경우
14.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모집을 통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법인(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이 법령상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그 사업목적에 속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집합투자관련 법규 1

3

집합투자(Collective Investment)의 개념

- 시행령에서 열거한 것 이외에 금융위원회가 사안별로 집합투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별도 마련(영 제6조제4항제15호)

- 운용에 따른 보수를 받는 전문적 운용자의 존재 여부
- 투자자의 투자동기가 전문적 운용자의 지식·경험·능력에 있는지 투자자와 전문적 운용자 간의 인적관계에 있는지 여부
- 운용결과가 합리적 기간 이내에 투자금액에 따라 비례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지 여부
- 투자자로부터 모은 재산을 전문적 운용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 사적 차치에만 맡길 경우 투자자 보호가 현저하게 곤란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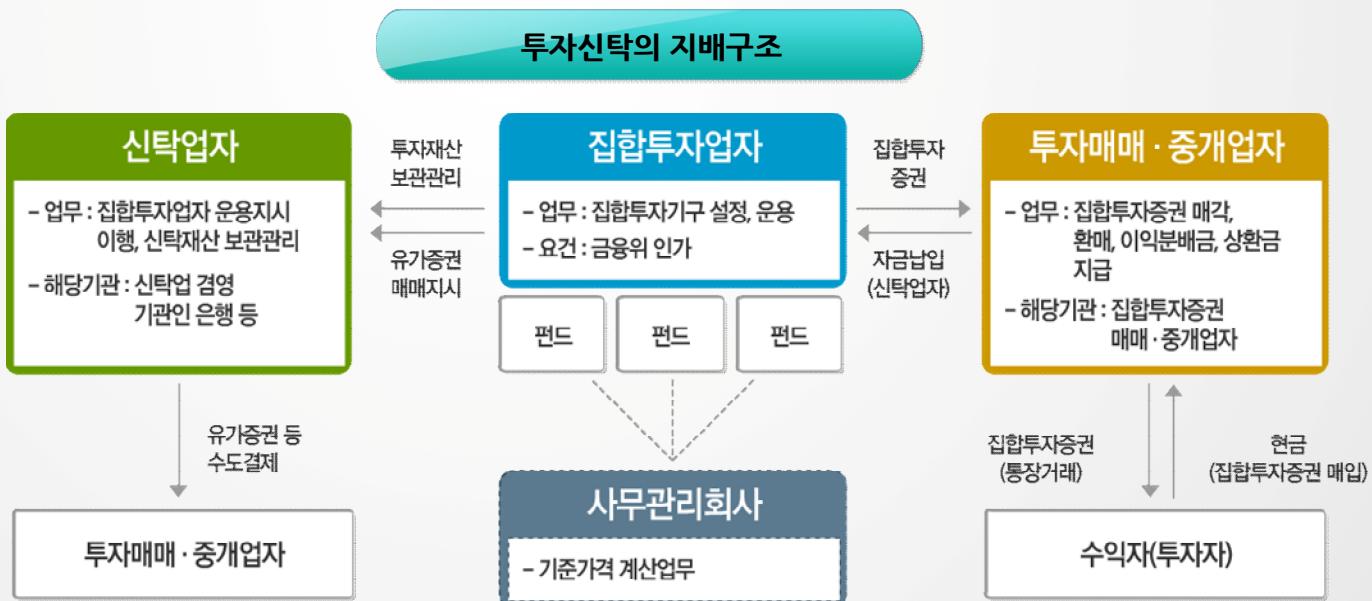
집합투자관련 법규 1

4

집합투자기구의 기관

1. 투자신탁 : 수익자총회

-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투자신탁 관련 중요사항을 직접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투자회사의 주주총회에 상응하는 제도



1)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가) 수익자총회 구성

- 수익자총회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

집합투자관련 법규 1

4

집합투자기구의 기관

나) 수익자총회 의결사항

- 자본시장법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 가능
 - 자본시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익자총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음

- ①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및 수수료의 인상
- ② 신탁업자의 변경(다만, 합병·분할·분할합병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④ 투자신탁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함)의 변경[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탁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⑤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⑥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동일종목 한도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됨)
- ⑦ 집합투자업자의 변경(다만, 합병·분할·분할합병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⑧ 환매금지형투자신탁(존속기간을 정한 투자신탁으로서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투자신탁을 말함)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⑨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운영

가) 수익자총회 소집권자

-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되, 신탁업자 및 5% 이상 보유 수익자도 집합투자업자에 대해 총회소집을 요구 가능
 -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는 경우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 5% 이상 소유 수익자는 금융위 승인을 얻어 직접 소집 가능

나) 수익자총회 소집통지 시기

-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각 수익자에 대해 총회일 2주 전에 서면으로 총회소집을 통지해야 함

집합투자관련 법규 1

4

집합투자기구의 기관

다) 수익자총회 소집통지 대상

- 소집통지는 실질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자*에게 함

* 집합투자증권은 실물발행을 하지 않고 예탁결제원에 일괄예탁방식으로 발행되므로 주주(수익자)명부에는 예탁결제원이 1인 주주(수익자)로 등재됨. 주주총회(수익자총회)에서의 의결권행사 등을 위해서 예탁결제원이 투자매매업자, 투자증개업자로부터 실질주주(수익자)명세를 제출받아 작성하는 것이 실질주주(수익자)명부임

- 수익자총회의 의장은 수익자총회가 수익자 중에서 선출

3) 수익자총회 결의

가) 수익자총회 결의요건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법 제190조제5항본문)
- 다만,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 할 수 있음(법 제190조제5항단서)

〈개정자본시장법상 수익자총회 성립요건 폐지〉

- 개정자본시장법(법률 제11845호, 2013.5.28., 일부개정)에 따라 수익자총회 성립요건이 폐지되고 결의요건은 완화
- 개정자본시장법에서 수익자총회 제도를 개선한 것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 속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임

나)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 가능(법 제190조제6항본문)
-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수익자는 영 제220조제2항에 따른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에 제출하여야 함(영 제221조제1항)

집합투자관련 법규 1

4

집합투자기구의 기관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합산 (영 제221조제2항)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개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함(영 제221조제3항)
-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제3항에 따른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음(영 제221조제4항)

다) 간주의결권행사

- 개정자본시장법(법률 제11845호, 2013.5.28., 일부개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하는 소위 '간주의결권행사'를 제도화하고 있음(법 제190조 제6항단서)
 - 간주의결권행사를 위해 자본시장법 제190조제6항단서에 따라 충족해야 하는 법정요건은 아래와 같음
 - i) 수익자에게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 ii)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 iii)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 iv)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집합투자규약에 적힌 내용을 알리는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영 제221조제6항)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란 집합투자업자가 i) 법 제190조제6항 각 호에 따라 간주의결권행사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사항, ii)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진 후에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통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는 것을 말함(금투업규정 제7-8조의2)

집합투자관련 법규 1

4

집합투자기구의 기관

4) 연기수익자총회

가) 연기수익자총회제도 도입배경

- 수익자총회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환매연기, 투자신탁 합병 등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수익자 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투자신탁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익자총회의 성립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연기수익자총회제도 도입

나) 연기수익자총회 소집의무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제3항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는 법 제190조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함(법 제190조제7항)

다) 연기수익자총회 결의요건

-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함.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 가능 (법 제190조제8항)
- 연기수익자총회 결의의 경우에도 i)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ii) 간주의결권행사가 준용된다 (법 제190조제8항)는 점에 유의

5)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가) 수익증권 매수청구권 행사 및 행사사유

- (수익증권 매수청구권 행사)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 청구 가능(법 제191조제1항본문)

집합투자관련 법규 1

4

집합투자기구의 기관

수익증권 매수청구권 행사사유(법 제191조제1항각호)

- i)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법 제191조제1항제1호)
- 2)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법 제191조제1항제2호)
 - * 법 제19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집합투자업자가 제225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것을 말함(영 제222조제1항)

나) 수익증권 매수방법

- o (수익증권 매수 비용 수익자 전가 금지)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됨(법 제191조제2항)
- o (수익증권 매수기간 및 방법)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매수청구기간(수익자총회결의일부터 20일 이내)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함(법 제191조제3항본문)
 - *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1조제3항 본문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하여야 함(영 제222조제2항)
-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 연기 가능(법 제190조제3항단서)
- o (수익증권 소각)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0조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消却)하여야 함(법 제190조제4항)

집합투자관련 법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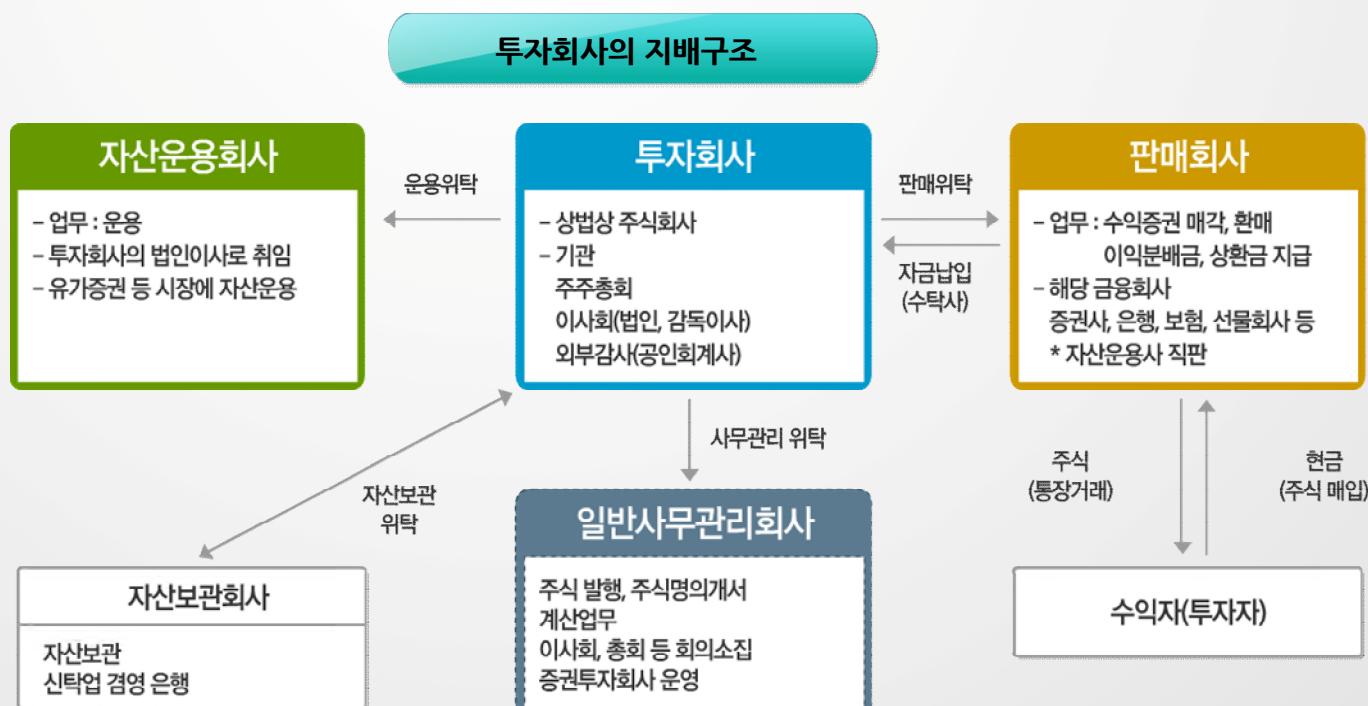
4

집합투자기구의 기관

2. 투자회사

1) 투자회사 기관의 특성

- 투자회사는 집단적·간접적 투자를 위한 법적 도구라는 특성상 투자회사의 이사는 감독이사와 법인이사(집합투자업자)로 구분되며, 내부감사가 없는 대신 외부감사가 의무화 되어 있음
- (투자회사 발기인의 자격) 임원의 자격(법 제24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투자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음(법 제194조제1항)



2) 이사

가) 법인이사

- 법인이사란 투자회사를 대표하고 투자회사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로서 당해 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가 됨
- 법인이사로 선임된 집합투자업자는 법인이사의 직무의 범위를 정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자를 그 임·직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으며, 투자회사에 통보된 임직원이 직무범위 내에서 행한 행위는 법인이사의 행위로 간주

집합투자관련 법규 1

4

집합투자기구의 기관

나) 감독이사

- 감독이사란 집합투자업자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고 투자회사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독하는 이사
- (감독이사 결격사유) 감독이사는 2인 이상이어야 하며, 독립적인 감독기능 수행을 위해 집합투자업자등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는 감독이사가 될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법 제199조제4항)

<감독이사 결격 사유>

-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의 자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
- 해당 투자회사의 발기인(최초 감독이사 선임 시에 한함)
- 투자회사의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 법인이사의 특수관계인 또는 법인이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자
- 그 투자회사의 주식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증개업자의 특수관계인
- 그 투자회사의 이사가 다른 법인의 이사로 있는 경우 그 법인의 상근 임직원인 자
- 해당투자회사의 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채권평가회사·투자매매업자·투자증개업자의 임직원 및 회계감사인(법인인 경우 소속 공인회계사)

- 감독이사가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함(법 제199조제4항)

다) 감독이사의 권한

- 법인이사·신탁업자·투자매매업자·투자증개업자·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하여 당해 투자회사와 관련되는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 및 회계감사인에 대하여 회계감사에 관한 보고 요구 가능

3) 이사회

가) 이사회 구성·소집 및 의결정족수

- 이사회는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로 구성되며, 이사회 소집은 각 이사가 하며,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나) 이사회 의결사항

- 이사회는 자본시장법 및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에 한해 의결

<자본시장법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사항>

- ①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매매업자·투자증개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변경계약 포함)의 체결
- ② 자산의 운용 또는 보관 등에 따르는 보수의 지급
- ③ 금전의 분배 및 주식의 배당에 관한 사항
- ④ 그밖에 투자회사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항

집합투자관련 법규 1

4

집합투자기구의 기관

다) 법인이사의 이사회 보고의무

- 법인이사는 3월마다 1회 이상 업무집행상황 및 자산운용내역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함

4) 주주총회

가) 주주총회 권한

- 자본시장법, 상법 및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의결

- 자본시장법에서 주주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합병, 환매연기, 정관 중요사항의 변경

나) 주주총회 소집권자

- (주주총회 소집 주체) 주주총회는 이사회가 소집(법 제201조제1항)

- (주주총회 소집 예외) 신탁업자 및 5% 이상 보유 주주는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사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는 경우 금융위 승인을 얻어 직접 소집 가능(법 제190조 제3항 및 제201조제3항)

다) 주주총회 결의

- (법상 주총 결의사항에 대한 결의요건) 주주총회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결의(법 제201조제1항본문)

- (규약상 주총 결의사항에 대한 결의요건)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집합투자규약으로 정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법 제201조제1항단서)

※ 개정자본시장법(법률 제11845호, 2013.5.28., 일부개정)에 따라 주주총회 성립요건이 폐지되었음에 유의

- 기타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연기총회 및 소집통지의 예탁결제원 위탁 등의 수익자총회 관련 규정을 준용. 투자회사는 정관변경 및 합병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에 대하여는 수익증권의 매수청구 관련 규정을 준용

집합투자관련 법규 1

5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및 등록

- 자본시장법에서는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하여 집합투자규약의 내용이 투자자보호상 문제가 없는지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1.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1) 투자신탁

가) 신탁계약의 체결

- (투자신탁의 설정) 집합투자업자가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사항*이 기재된 신탁계약서에 의하여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투자신탁을 설정(법 제188조제1항 및 영 제215조)

- 자본시장법령에서 신탁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펀드 운용 관련사항, 수익자총회 관련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음

- * 1.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상호
- 2.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에 관한 사항
- 3.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4.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 5.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과 지급시기·방법에 관한 사항.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해당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6. 수익자총회에 관한 사항
- 7.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1. 투자신탁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
- 2. 투자신탁의 명칭
- 3. 투자대상자산(법 제229조제4호에 따른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따로 기재하여야 함)
- 4.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
- 5. 수익증권의 추가발행과 소각에 관한 사항
- 6. 신탁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 7.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와 기준가격의 계산에 관한 사항
- 8. 이익 외의 자산 등의 분배에 관한 사항
- 9.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0. 신탁계약의 변경과 해지에 관한 사항
- 11.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 12.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집합투자관련 법규 1

5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및 등록

나) 신탁계약의 변경 및 수익자총회 결의

- 집합투자업자가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함 (법 제188조제2항전단)
 -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수익자보호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인 경우에는 사전에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법 제188조제2항후단 및 영 제217조)

<신탁계약 변경사유 중 수익자총회 결의 사항>

- ① 보수 기타 수수료 인상
-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③ 신탁계약기간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제외)
- ④ 투자신탁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함)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탁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 제외
- ⑤ 주된 투자대상자산 변경
- ⑥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 ⑦ 집합투자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금산법에 따른 금융위 명령으로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외)
- ⑧ 개방형펀드의 폐쇄형펀드로의 변경
- ⑨ 환매대금지급일 연장
- ⑩ 그 밖에 수익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가 정하는 사항.

<수익자총회 면제사유(영 제216조)>

- 법 제18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양도 등으로 신탁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
 2. 법 제184조제4항, 법 제246조제1항 등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
 3.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5. 제245조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관련 법규 1

5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및 등록

다) 신탁계약 변경 내역 공시 및 수익자 통지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시해야 함
 -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 변경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개별통지 해야 함

라) 신탁원본 전액 금전납입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는 경우(그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를 포함) 신탁업자에게 해당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을 금전으로 납입하여야 함(법 제188조제4항)

2) 투자회사

가) 발기인의 정관 작성 및 기명 날인

- 투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1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함(법 제194조제2항)
 - 투자회사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투자신탁 신탁계약서 기재사항과 사실상 동일

나) 발기인의 자격

- 발기인에 대해서는 일반적 결격사유(집합투자업자 임원결격사유 준용)만 있고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음(법 제194조제1항)*

* 통상 집합투자업자가 발기인이 됨

다) 발기설립

- 발기인은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총수를 인수해야 하므로 투자회사는 발기설립의 방법으로만 설립해야 함

라) 주식인수가액 납입 등 투자회사 설립절차

- | |
|--------------------------------|
| ① 발기인의 주식 인수가액 납입 완료 |
| ② 이사 선임 |
| ③ 이사는 설립경과 조사하여 이사회 및 발기인에게 보고 |
| ④ 설립등기 |

집합투자관련 법규 1

5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및 등록

마) 투자회사의 정관변경 : 이사회 결의

- (원칙 : 이사회 결의) 투자회사의 정관변경은 이사회 결의로서 함(법 제195조제1항본문)
- (예외 : 주주총회 결의) 중요한 사항(투자신탁의 경우와 동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함(법 제195조제1항단서)
- (예외 :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 없이 정관 변경) 투자회사는 법 제19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병·분할·분할합병, 영 제229조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정관을 변경할 수 있음(법 제195조제2항)
- (정관변경 공시 및 통지의무) 투자회사는 법 제19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법 제19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함(법 제195조제3항)

2.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1) 집합투자기구 등록 주체

가) 투자신탁 및 투자익명조합 : 해당 집합투자업자

나) 회사형펀드(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및 투자합자조합 : 당해 회사 및 조합

2) 자본금 또는 출자금 요건

- 투자신탁 외의 형태의 펀드(회사형펀드,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는 등록신청당시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함(영 제209조)

※ 예외 : 법 제279조에 따라 등록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 중 법 제279조제2항 후단에 따라 등록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는 자본금(출자금) 1억 원 이상 요건 적용 배제(영 제209조제1호단서 및 제2호단서)

집합투자관련 법규 1

5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및 등록

3) 변경등록

-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금융위에 등록한 집합투자기구 관련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금융위에 변경등록 해야 함(법 제195조제8항)

- 다만, 법령개정이나 금융위 명령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또는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예외 인정(영 제210조)

4) 등록의 효력발생시기

- 공모펀드의 경우 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서와 증권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절차로 일원화하여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때에 등록된 것으로 의제
-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후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정신고서 효력발생 시 변경등록한 것으로 의제



정리하기

- 투자펀드(investment fund)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pooling) 증권 등의 자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투자지분에 따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집단적·간접적 투자제도를 의미한다.
- 미국에서 발전한 '투자신탁'은 영국에 수입되어 1930년대 영국에서 현대적 형태의 투자신탁(Unit Trust)이 탄생하였다.
- 미국에서는 대공황을 거치면서 회사형 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Investment Company)가 뮤추얼펀드(Mutual Fund)라는 명칭으로 집합투자의 대명사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 자본시장법에서 법적 형태에 따른 펀드분류는 i) 법인(회사)형펀드(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ii) 신탁형펀드(투자신탁), iii) 조합형펀드(투자합자조합·투자익명조합)로 구분한다.
- 개정자본시장법(법률 제11845호, 2013.5.28, 일부개정)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등 금융투자업 상호간의 구분을 그 특성에 맞추어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집합투자의 개념을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하여 모은 금전등'에서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으로 개정하였다.
-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투자신탁 관련 중요사항을 직접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투자회사의 주주총회에 상응하는 수익자총회 제도를 두고 있다.
- 수익자총회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환매연기, 투자신탁 합병 등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수익자 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투자신탁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익자총회의 성립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연기수익자총회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 자본시장법에서는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하여 집합투자규약의 내용이 투자자보호상 문제가 없는지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정리하기

- 공모펀드의 경우 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서와 증권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절차로 일원화하여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때에 등록된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

